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132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403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132677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정수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조규현

변론 종결 2021. 8. 13.

판결 선고 2021. 9. 1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 9. 접수 제1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8. 4. 주식회사 D 냉동전기자재 및 전기공사를 소외 E에게 하도급하였고, E은 2015. 8. 8. 위 공사를 위한 일용노무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8.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판넬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하반신마비,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가 2016. 8. 3. C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132601호)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8. 14. 'C은 원고에게 195,50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17. 12. 22.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110,000,000원(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 잔금 9,900만 원은 2018. 1. 31. 지급)

○ 부동산 인도일: 공란

○ 중개인: 없음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재산상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속한 2017년의 C의 경영상황은 순손실이 248,999,067원에 달하였고 부채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26,472,593원이 있었다. 반면,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시가 18,503,513원), 약 41,807,955원의 유동자산¹⁾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3)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불과 약 9개월 후인 2018. 10.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8.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다만 그 액수와 범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상당한 금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이자 주된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비록 C이 1억 1,000만 원의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 그 매도대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C의 자산은 170,943,868원(차량운반구 18,503,513원+기타 비유동동자산 632,400원+유동자산 41,807,955원+매도대금 110,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경영상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던 점, C의 대표이사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C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사해의사 존부 피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목적은 당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회사의 갱생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매도대금을 직원급여 및 판매비, 관리비 등 회사의 존속과 운영을 위한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C의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용도에는 대표이사인 F의 급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자금은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또한 피고는, 자신이 C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지만, C의 구체적 경영상황이나 자산상태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소 제기 사실 등을 알 수 없었고, 실제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을 치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와 C 대표이사와의 인적 관계, 위에서 본 매매대금의 사용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경영상황 및 그 매도 직후 C의 폐업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된 것으로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박형순

별지

1) 그 중 상당 부분이 주주대여금(약 2,370만 원)과 미수수익금(약 220만 원)이다.